

## 법무매거진

# 판사 도장 안 찍힌 압수 수색 영장... 대법 '압수 증거물, 증거능력 인정'



압수 수색 영장에는 발부하는 판사가 도장을 찍는다. 판사가 날인하지 않은 압수 수색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도 증거능력이 있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압수 수색 영장이 효력이 있는지, 이 영장을 바탕으로 압수한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영장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상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까지 공소 사실과 관련이 높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기술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3년 7월 회사 영업기밀을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영업기밀을 넘긴 뒤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에 관사 날인이 빠져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영장은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며 “영장은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출처/조선일보)